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1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12일, 운영회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11월 2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치매는 조기 예방 및 지속적인 진료로 질환의 진행 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는 질환으로서, 이에 치매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6조,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하여,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3년 968만명이며, 2025년에는 1,051만명, 2030년에는 1,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sup>1)</sup>
- 이렇듯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는 노년기의 대표적 질환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연결되고 있으며

1) 보건복지부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참고

- 2023년 기준 금천구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4,172명으로 추정되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금천구 치매인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천구	서울시	전국	금천구	서울시	전국	금천구	서울시	전국
60세	노인인구	58,446	2,243,671	12,575,641	60,975	2,317,874	13,153,957	64,684	2,436,519	13,856,185
	추정치매환자수	3,661	151,772	910,726	3,905	160,698	960,555	4,269	173,967	1,025,357
	치매 유병률(%)	6.26	6.76	7.24	6.41	6.93	7.3	6.6	7.14	7.4
65세	노인인구	39,098	1,540,883	8,577,830	41,004	1,608,995	9,010,545	44,531	1,714,624	9,608,981
	추정치매환자수	3,541	147,595	886,173	3,782	156,478	935,086	4,172	169,404	1,000,294
	치매 유병률(%)	9.06	9.58	10.33	9.23	9.73	10.38	9.38	9.88	10.41

※자료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중앙치매센터, 2023)  
 : (2023년) 금천구 인구 - 금천구청 금천통계 '기간별연령별인구통계(2023.12)'  
 : (2023년) 서울시, 전국 인구 -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령\_및\_성별\_인구유연동(2023)'  
 : (2023년) 치매 유병률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 오늘은'

- 치매는 발병 이후 완치 또는 발병 이전으로의 회복이 어렵고 심한 건망증과 기억장애로 시작하여 피해망상과 환각증상, 판단력의 저하, 배회 등의 증세가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24시간 장기간에 걸친 수발이 요구됨.
- 따라서 24시간 장기간에 걸친 수발로 인해 치매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재정적 부담과는 별개로 크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금천구 차원의 치매 관리 조례 제정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본 제정안의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서울시 3개 자치구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 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